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10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인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¹⁾에 따른 사항

○ 제2조(정의): “당선인” 과 “구청장직” 에 대한 용어

1)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과 예우 (안 제3조~제4조)
- 3) 비서실장 등 지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4)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²⁾ (안 제6조)
- 5)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안 제7조)

1. 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7조)
- 7)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등 공개³⁾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8) 재·보궐 선거 등으로 당선된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도록 하여 그 동안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2)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3)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를 신설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10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3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를 신설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간사·대변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간사·대변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재·보궐 선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제1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 위원회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안제15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미첨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은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되며,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운영 비용과 조례안 지원항목 고려 시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고 영 룡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1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기금별 존속기한이 2021. 12. 31.로 만료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 12. 31.로 5년 연장하고,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상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령 정비, 기금명칭 정비(안 별표)

○ 존속기한 연장 기금

연번	기금 명칭	현재	변경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2	체육진흥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3	자활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연번	기금 명칭	현재	변경
4	노인복지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5	양성평등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6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8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9	도로굴착복구 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10	아동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 근거법령 정비

기금명칭	현재	변경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기금 2. 체육진흥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중소기업육성기금 5.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7. 도로굴착복구기금 8. 한옥보전지원기금 9. 기후변화기금 10. 사회투자기금 11. 아동기금 12. 장애인체육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1.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기금명칭 정비

현재	변경	근거법령
자활기금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제834호 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2016년 단체협약 ⁵⁾ 에 따른 조례 개정

4) 2010. 12. 24. 조례 제834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자활기금” 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을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또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먼저, 존속기한이 2021. 12. 31.로 만료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6. 12. 31. 까지 5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자활기금” 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284회 임시회에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2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보
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
락된 사무를 신설하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을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별표, 1호)

주요내용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 삭제	(2021.1.13.시행)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⁶⁾

6)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 신설

주요내용	근거법령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 [시행 2021.1.1.] 지방일괄이양법 제43조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⁷⁾

3)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

주요내용	근거법령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1.6.7.] [법률 제10788호] 의약품법 제45조제1항 ⁸⁾
17.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5호] 약사법 제47조 ⁹⁾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21호] 약사법 제44조의 ² 10) 신설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2.6.8.] [법률 10786호] 약사법 제48조 ¹¹⁾ , 제49조 ¹²⁾
21.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의료법 제38조 ¹³⁾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7) 시행 2021.1.1. [법률 제17007호],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한다.”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 8) 시·도지사에서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0)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11)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4)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주요내용	근거법령
2.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8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¹⁴⁾
10.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시행 2011.10.31.] [보건복지부령 제82호]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삭제
18.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¹⁵⁾

5) 착오 기재된 내용 수정

주요내용	수입기관(근거법령)
1.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¹⁶⁾	보건소장
2.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나. 정기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¹⁷⁾

6)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7)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 12)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 13)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절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4) 제8조(의료급여증) ③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5)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부분” 부분 삭제
- 16) 비교표에는, “다. 7급이라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라 잘못 기재
- 17)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와 ②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신설 ③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의 신설 ④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정비와 위임사무의 삭제 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다만,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이미 오래 전에 자치구의 권한 사무로 전환된 사무가 누락되어 새로 신설되는 사례가 많아, 평상시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3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2022. 1.13.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되는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문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20조18), 제32조19), 제78조20)
- 2) 「지방자치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른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 ~ 제23조)

-
- 18)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 19)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20)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조례의 일부 내용 정비 및 신설 (안 제4조, 제7조, 제9조)

○ 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입법예고 비대상

현재	정비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① - 중략 -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좌동 -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 제7조(예고기간)

현재	정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 ²¹⁾ 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안 제9조(공청회): 공청회 공고의 구체적 방법

현재	정비
② 1.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u>필요한</u> 사항	②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u>공청회 개최에 필요한</u> 사항

※ 정비(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오타 (“공청에” ⇒ “공청회”)로 수정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와 문맥 등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안 제11조, 안 제13조 ~ 안 제14조, 안 제16조 ~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른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에 대하여 조례로 신설·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와 문맥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21)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4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제2조)

2) 지방보조사업²²⁾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

○ 법 제5조제2항²³⁾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²²⁾ 제2조(정의)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1. 구청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²⁴⁾ 공모 (안 제4조)

- 법 제7조제2항²⁵⁾

4)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5조)

- 법 제12조제1항제4호²⁶⁾에 의거 조례로 규정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중요사항의 보고: 법 제21조제1항²⁷⁾

23)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4) 제2조(정의)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²⁸⁾

6)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안 제7조): 법 제22조제4항²⁹⁾

7)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지급의 제한, 지급신청의 종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법 제25조³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20조)

○ 법 제26조제1항³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27)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29)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0)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5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고, 의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연구결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토록 하는 조항 신설³²⁾ (안 제13조)

3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기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
- 2) 용역결과를 평가 시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고, 연구의 부정행위를 판단하여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안 제14조)
- 제3항 ~ 제6항까지 신설
- 3)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적용하여 문구와 문맥 그리고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토록하고,

용역결과 평가 시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고, 연구의 부정행위를 판단하여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기존 조례의 문구와 문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6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2. 1.13.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3.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 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3.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33)

33)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³⁴⁾

3)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³⁵⁾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³⁶⁾ -----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³⁷⁾ -----

34)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36)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38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9조 39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40 ----- -----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의 개정

37)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견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8)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9)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0)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41 -----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1. 「지방자치법」 제102조 42 ---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 41)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42)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43 -----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44 ---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2조 45 ----- -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46 ----- -----

43)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44)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 총략 ---

45)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6)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47) ----- --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류 및 비치)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	제2조(종류 및 비치) ② ----- -----.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48)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2. 1.13.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7개의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단순히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47)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48)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7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⁴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⁵⁰⁾에 의거하여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현 황

- 1981년 준공된 건물로 내용연수 40년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
- 길음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 완료시기로 행정수요 증가와 신

49)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0)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길음구역 사업 추진에 따라 현 주민자치센터 철거 필요

2)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

○ 신축계획 변경

구분	현 청사 현황	신길음구역(당초)	길음1축진구역(변경)
위치	길음동 1064-1 (길음동 1064-3, 5 재활용센터)	신길음지구 구역내 (공용청사 예정지)	길음1축진지구 구역내 공공용지③ 51
대지	대지면적 : 270.01㎡	대지면적 : 557.2㎡	대지면적 : 1,284㎡
건축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 506.99㎡)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 1,98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2,310㎡)

○ 시설조성 계획(안)

구분	내 용			
위 치	성북구 길음동 1059 일대			
규 모	토지 1,248.2㎡, 건물 연면적 2,170.3㎡(지하 1층 / 지상 4층)			
시설규모	지상4층	프로그램실, 동아리 활동실 등		
	지상3층	다목적실(대강당) 등		
	지상2층	회의실, 휴게실, 북카페, 동장실 등		
	지상1층	민원실, 상담실 및 주민등록실		
	지하1층	주차장 등		
사업비	공사비	신축	6,788,000	총 공사비 7,713,000 천원
	설비비	자산취득비(운영물품 등)	37,000	
	용역비	설계, 감리 등	813,000	
	기타부대비	청사이전비 등	75,000	

※ 세부 공간구성은 추후 공사 기본·실시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

51) 길음1축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

○ 예산조치(안)

- 2022년: 2022년 기금편성(설계비 등) 확보 예정
- 2023년: 2023년 기금편성(공사비 등) 확보 예정
- 2024년: 2024년 기금편성(기타 부대비 등) 확보 및 건물 준공 예정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천원)	비 고
취득	길음동 1059 일대	건물	2,170.3㎡	7,713,000	신축
		합계		7,713,000	

※ 길음1축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 활용

4) 향후 추진 일정

- 2021. 11월: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설계용역 의뢰
- 2022. 09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 2023. 04월: 건축공사 착공
- 2024. 12월: 건축공사 준공(개관식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길음2동 주민센터는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및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주민센터 사용면적은 507㎡(치안센터 89㎡ 포함, 실제 사용면적 418㎡)으로 매우 협소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수요인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한계가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8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보류)】

【2021. 11. 29.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⁵²⁾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제1항⁵³⁾에 의거하여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주변현황

52)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3)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부지 주변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길음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공간 길이음과 문화예술교육공작소, 청년가게 5개소 밀집

2)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계획

○ 현재 상태

- 삼양로 29, 29-1 (주택 및 상가)

- 해당 부지 건물 철거 후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예정

○ 시설조성 계획(안)

구분	내 용			
위 치	성북구 삼양로 29, 29-1, 31 등 3필지			
규 모	토지 533.8㎡, 건물 연면적 1,331.7㎡(지하 1층 / 지상 6층)			
시설규모	지상6층	74.6㎡	인큐베이팅 기업 입주공간	
	지상5층	216.2㎡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 공간	
	지상4층	240.2㎡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공간, 회의실, 멘토링룸	
	지상3층	266.9㎡	뷰티창업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지상2층	266.9㎡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시제품제작실	
	지상1층	266.9㎡	청년공간「길이음」, 사무실	
	지하1층	266.9㎡	주차장 (10면)	
사업비	부지매입비	토지 및 건물	3,357,265	총 사업비 8,292,932 천원 (전액 구비)
	용역비	설계, 감리 등	244,437	
	공사비	철거 및 신축	4,375,907	
	기타 부대비	예비비 등	315,323	

※ 세부 공간구성은 추후 공사 기본·실시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

○ 예산조치(안)

- 2022년: 2022년 기금편성(설계비, 철거비) 확보 예정
- 2023년: 2023년 기금편성(공사비 등) 확보 예정
- 2024년: 2024년 기금편성(기타 부대비 등) 확보 및 건물 준공 예정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천원)	비 고
취득	길음동 1245-2,3	토지	395.3㎡	2,213,680	기준가격
		건물	60.5㎡	9,165	
		합계		2,222,845	
처분	길음동 1245-3	건물	60.5㎡	9,165	철거
		합계			
취득	길음동 1245-1,2,3	건물	553.8㎡	4,935,667	신축
		합계			

4) 향후 추진 일정

- 2021. 12월: 부지매입 계약 체결
- 2022. 5월: 서울시 투자심사
- 2022. 7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 2023. 1월: 건축공사 착공
- 2024. 6월: 공사 준공
- 2024. 7월: 센터개관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부지 주변은 유해업소를 정비하면서 길음청년창업거리로 조성하는 지역으로 기존의 청년공간 길이음과 문화예술교육공작소, 청년가게 5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이전 통합되며 뷰티창업공간과 크리에이터스튜디오 등 약 63개의 청년창업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 즐비했던 거리에 청년창업 앵커시설의 조성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19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과 ‘가족관계등록부’ 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조항	기존	변경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⁵⁴⁾ 」 제154조 및 제156조로 변경

54)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항	기존	변경
제6조 제1항제9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⁵⁵⁾ 」

2)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및 신설 (안 제6조)

○ 제1항제6호, [기존 대상자에서 감면대상 추가]

기존	추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신설

조항	내용
제1항제1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5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3호, 2021. 4. 20. 일부개정] 되어 제명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현행			개정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⁵⁶⁾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종 목	단위	수수료액
(2) 공유재산 대부 신청			(2) 삭제		
(가) 신규	1건	5,000원			
(나) 연장	1건	3,000원			
3. 행정정보의 공개			3. 행정정보의 공개		
다. 행정정보의 공개 ⁵⁷⁾			다. 행정정보의 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6조1항,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항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제명을 변경하고,

56)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서 해당조항(11호, 12호) 삭제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수수료”에서 해당조항 개정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법률 제11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을 추가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0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서 규정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의 금액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 109,006,287천원 × (1.2/10,000) = 13,081천원⁵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 의 설립과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번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과 「지방세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21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4.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가.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각종 재난대비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하였던 사항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5장 4절 49조”에서 “5장 4절 46조”의 형식으로 기존 조례안 대비 3개 조가 줄어들었음.
- 2) 제1장 총칙 : 제1조 ~ 제5조로 구성, 기존의 조 명칭 변동 없음
 - 제2조(정의) : “용어” 나열 ⇒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로 간결화
- 3)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 제1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안 제6조~제14조)

- 기존 12개 조항에서 개정 9개 조항으로 간결화
- 제2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관리본부(안 제15조~제24조)
 - 기존 12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간결화
 - 제20조(직무대행) 관련법령 인용 조항 “제16조제1항” 을 “제16조제2항⁵⁹⁾” 으로 변경
 - 신설 조항 제18조~20조, 제23조
- 제3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안 제25조~제26조)
 - 기존과 동일한 제명의 개정(안) 2개 조항
- 제4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안 제27조~제29조)
 - 기존과 동일한 제명의 개정(안) 3개 조항
- 4)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안 제30조 ~ 제36조)
 - 7개 조항으로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신설
- 5)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안 제37조 ~ 제39조)
 - 기존의 “피해상황의 신고” 조항 삭제
- 6)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안 제40조 ~ 제46조)
 - 제44조(안전취약계층⁶⁰⁾에 대한 지원) 구체화

59)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 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취약계층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의 재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의 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인용조항 수정 및 성북구 구민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약칭 사용어구를 넣어 조문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3조제3항 중 “구민의”를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로 수정.
- 제20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1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4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인용조항 수정 및 성북구 구민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약칭 사용어구를 넣어 조문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3항 중 “구민의” 를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로 수정한다.
- 제20조 중 “제16조제1항” 을 “제16조제2항” 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민의”를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0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의 책무)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u>구민의</u>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의 책무) ③ ----- ----- ----- <u>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u>의 ----- ----- ----- -----.</p>
<p>제20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제16조제1항</u> 각 호에 따른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0조(직무대행) ----- ----- ----- <u>제16조제2항</u> ----- ----- ----- -----.</p>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

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성북소방서장
3. 성북경찰서장
4. 종암경찰서장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6. 제56사단 제220연대 제1대대장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

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

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 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30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3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참여기관 또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4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치구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

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 시설 개선점검 및 자재교체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5조(회의록) ①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심의 결과를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장 이 명 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2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2) 소셜미디어⁶¹⁾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3) 소셜미디어의 활용⁶²⁾ (안 제3조)

6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

62)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4) 게시물의 유지·관리 (안 제4조)
- 5)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⁶³⁾ (안 제5조)
- 6) 소셜미디어 서포터스⁶⁴⁾의 운영 (안 제6조)
- 7) 개인정보 보호 (안 제7조)
- 8) 시행규칙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제정안은 성북구의 정책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게시물을 유지·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63)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64)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한 사이버 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포터스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3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만”

○ 안 제7조제1항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2) 심의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⁶⁵⁾ 반영 (안 제6조)

65)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

3) 원고료, 기념품 등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안 제8조)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안을 시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향후, 구민들이 성북소식지의 제작·발행과 참여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4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 6. 9.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1. 6.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핵심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우리 구 조례에 「지능정보화⁶⁶⁾ 기본법」을 반영하면서,

○ 현행 7장 59조의 조례를 7장 40조로 간결하게 정비

2)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

3)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안 제4조~제12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⁶⁷⁾”의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과

66) 제2조(정의)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

4)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안 제13조~제25조)

○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공유·유통,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5)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안 제23조~제24조)

○ 정보격차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

6)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안 제25조~제27조)

○ 정보화자료의 관리와 자료제공, 수수료에 관한 규정

7) 제6장 정보화 교육 (안 제28조~제33조)

○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과 기반 구축, 공무원·구민 등의 정보화 교육, 교육시설·장비의 확보와 수수료 징수 규정

○ 안 제33조제1항의 “별표 1”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기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운영 시 10% 감면조항 삭제⁶⁸⁾

8) 제7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안 제34조~제40조)

○ 홈페이지 설치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 이용자 참여 행사, 전자학습 등과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

67)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강료의 10%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 6. 9.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1. 6.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핵심 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59개 조문 중 사문화 되어 실효성이 없는 19개의 조문을 삭제하여 40개 조항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배려를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25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행 2020.12.22.] [법률 제1769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⁶⁹⁾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제7조, 제2장의 제목)

○ “공표는” 을 ⇒ “사전적 공개 등은” 으로

○ “공표하는” 을 ⇒ “사전적 공개하는” 으로

○ 조례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를 ⇒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으로 변경

69) 법률 제17690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용어 변경

- 제2장의 제목 “행정정보 공표제도” ⇒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으로
- 2)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70)의 개정
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1조제2항)
 - “과반수” 를 ⇒ “3분의 2” 로
 - “위촉한다.” 를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로
- 3) 잘못 기재된 문구 삭제 (제10조)
 - “별표 제3호” 를 ⇒ “별표” 로 정비
-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정
비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제정안은 성북구의 정책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게시물을 유지·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0)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3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6. 임현주 의원 외 10명 발의(의안번호429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의 마련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접수·처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2) 이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 (안 제3조)
-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4) 공사감독과 공사시행 통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5)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부실공사의 신고·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부실공사의 징후를 초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매뉴얼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제한하고,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계약금액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제4항에서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1조 중 “시행하는” 을 “발주하는” 으로 한다.
- 제3조 중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를 “공사” 로 한다.
-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9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3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제한하고,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계약금액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제4항에서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중 “시행하는”을 “발주하는”으로 한다.
- 제3조 중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로 한다.
-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시행하는”을 “발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u>시행하는</u>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u>발주하는 공사 중</u> <u>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u> 대하여 적용한다.</p> <p>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④ <u>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조(목적) ----- ----- <u>발주하는</u> ----- -----</p> <p>제3조(적용범위) ----- ----- ----- <u>공사</u>----- -----.</p> <p>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④ <u>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 사업 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통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처리) ①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

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추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실 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6. 김일영 의원 외 14명 발의 (의안번호 432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4.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일영 의원)

가. 제안이유

성북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2)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3) 구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⁷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5) 협력체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등 전국에서 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는 조례로써, 성북구의 경우 2021. 10. 19.일 성북경찰서 주관으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성북구민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을 갖으며 구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 등 가정파탄을 초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확대 및 사업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도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책무” 를 “관련기관의 책무” 로 수정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 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으로,
“금융소비자를” 을 “성북구민(이하 “구민” 으로 한다.)을” 로 수정.
- 제5조의 제목 “(구민의 권리)” 를 “(구민의 권리 및 책무)” 로,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를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
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삭제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2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4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책무” 를 “관련기관의 책무” 로 수정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 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으로,
“금융소비자를” 을 “성북구민(이하 “구민” 으로 한다.)을” 로 수정.
- 제5조의 제목 “(구민의 권리)” 를 “(구민의 권리 및 책무)” 로,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를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삭제 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금융회사의 책무)”를“(관련기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으로, “금융소비자를”을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구민의 권리)”를“(구민의 권리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를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인력의 양성”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u>금융회사</u> 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u>금융 소비자</u> 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u>경찰서</u> 및 <u>금융기관</u> 등은 ----- ----- <u>성북</u> <u>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u> 을 ----- ----- ----- ----- --.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u>교육</u> 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 ----- <u>교육</u> 의 기회를 <u>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u> <u>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u> <u>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 ----- ----- ----- <u>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u> <u>에서 지원</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u>교육 체계 구축</u> 및 <u>교육 인력</u>	2. ----- ----- <u>교육</u>

의 양성

3.·4. (생략)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성북·종암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6. 김세운 의원 외 15명 발의 (의안번호 433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3.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세운 의원)

가.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안전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⁷²⁾”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원 사항⁷³⁾을 규정함(안 제5조)

72)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73)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규정함(안 제6조)

○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규정함(안 제7조)

- 별표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 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 원	제5조제2호	성북구 법률고문 상담서비스 연계 등	
의료비	제5조제3호	2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4호	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120분 이내)	휴식시간은 공가 처리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 영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	예산의 범위 내	

○ 지원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
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6,079건으로, 2019년 3
8,054건 대비 8,025건(21.09%)이 증가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
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33page에는
①)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조치사항 ② 폭력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③ 각 지자체 민원실(주민센터 포함) CCTV, · 비상벨· 녹음전화 등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61page에는 민원공무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개인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실시와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강구하고 독립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의 경우 기존의 작은 작은 공간마저도 주민자치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일선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임.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용어와 별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8조제3항 중 “위탁하여” 를 “의뢰하여” 로 수정
- [별표] 제목 중 “제5조 관련” 을 “제7조제2항 관련” 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3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3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의 용어와 별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제3항 중 “위탁하여” 를 “의뢰하여” 로 수정
- [별표]제목 중 “제5조 관련” 을 “제7조제2항 관련” 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위탁하여”를 “의뢰하여”로 하고,

[별표] 지원기준 “(제5조 관련)”을 “(제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지원 방법)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별표] 지원기준(제5조 관련)</p>	<p>제8조(지원 방법) ③ ----- ----- ----- ----- 의뢰하 여 -----.</p> <p>[별표] 지원기준(제7조제2항 관련)</p>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

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제5조제2호	성북구 법률고문 상담서비스 연계 등	
의료비	제5조제3호	2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4호	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120분 이내)	휴식시간은 공가 처리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	예산의 범위 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지원 신청 내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은행명</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계좌번호</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td> </tr> </table>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 우)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중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 8.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6. 김우섭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434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1. 24.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우섭 의원)

가.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미취업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⁷⁴⁾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2)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7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6.)

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4조)

○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

5) 지원 사업⁷⁵⁾에 관한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6)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와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7)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안 제10조)

○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병행

8)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75)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회적 고립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청년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립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립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문맥상 누락된 단어와 인용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도모 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마련” 을 “재원 마련” 으로 수정
-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은” 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으로 수정
-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2조의 제목 “포상” 을 “표창”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으로 수정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4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4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문맥상 누락된 단어를 추가하고, 표창 조문의 인용 조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중 “마련” 을 “재원 마련” 으로 수정
-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은” 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으로 수정
-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2조의 제목 “포상” 을 “표창”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으로 수정 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마련”을 “재원 마련”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은”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u>마련</u>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② ----- ----- ----- -- <u>재원 마련</u>----- --.</p>
<p>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② <u>기본</u> 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② <u>제1</u> 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 ----- ----- -----.</p>
<p>제7조(지원 사업) ② (생략)</p> <p>③ <u>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u></p>	<p>제7조(지원 사업)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u>등에게 포상</u>할 수 있다.</p>	<p>제12조(표창) ----- ----- ----- <u>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u>---</p>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

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법인·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